

eUCP에 있어서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on of Examination of Electronic Records under the eUCP

전순환(Soon-hwan Jeon)

중부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eUCP상의 전자기록의 심사기준 |
| II. eUCP의 특징과 적용범위 | V. 결론 |
| III. eUCP상의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 참고문헌 |

Abstract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eUCP came into force on 1 April 2002. The eUCP is a supplement to the current existing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500), which governs the use of electronic presentation.

The eUCP is not a revision of the UCP. It is a supplement intended to deal with situations where presentations are made electronically. That is to say, the eUCP is a supplement to the UCP that, when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UCP, will provide the necessary rules for the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equivalents of paper documents under letters of cred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criterion of examination of electronic records under the eUCP.

Key Words : eUCP, UCP, L/C, e-Payment

I. 서 론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장이 은행에 의하여 그 취급이나 어구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쟁에 따른 법정제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하여 1933년에 제정된 후, 전시 중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UCP 400), 1993년(UCP 500)에 각각 개정됨으로써 거의 10년마다 개정되어 온 것이다.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은 1993년에 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으로서, 그 정식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500; UCP 500)”이다.

UCP 500의 개정이래,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자무역이 활성화됨으로써 서류의 전자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신용장(electronic letter of credit)이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은행위원회)의 장래에 관한 특별위원회(Task Force on the Future of the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서류의 전자적 제시를 위한 규칙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은행위원회는 UCP에 대한 보충으로서의 적절한 규칙을 준비하기 위하여 UCP, 전자거래, 법적 문제 및 관련 산업(예를 들면 운송)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은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천을 승인하였고 작업반에 의한 18개월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 2001년 11월 7일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Banking Commission) 회합에서 “전자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의 보칙(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이 승인되고, 2002년 4월에 발효되었다. 이 eUCP는 디지털형식의 전자서류의 제시와 서류불일치에 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화된 점검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¹⁾ 전자신용장과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CP의 특징과 적용범위와 eUCP하에서 전자기록이 제시되고 심사되는 내용을 살펴본 다음, eUCP상의 전자기록의 심사기준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1) <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com>

II. eUCP의 특징과 적용범위

1. eUCP의 제정

1) eUCP의 제정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은행위원회)의 장래에 관한 특별위원회(Task Force on the Future of the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서류의 전자적 제시를 위한 규칙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행 UCP 500과 종이기반의 신용장에 대한 전자적 등가물, 즉 전자신용장의 처리간의 연결고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UCP 500은 화환신용장의 시행을 적용하기 위하여 60년 이상동안 사용되어 온 ICC의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이다. UCP가 신용장산업을 위하여 자체규칙을 제공함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 필요성은 기술적인 진보를 수용하기 위한 규칙을 갱신하는 것이 명백하였다.²⁾

현재 종이에서 전자신용장으로 발전됨으로써 시장은 이러한 거래에서의 지침을 제공하도록 ICC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 반응으로 은행위원회는 UCP에 대한 보충으로서의 적절한 규칙을 준비하기 위하여 UCP, 전자거래, 법적 문제 및 관련 산업(예를 들면 운송)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천을 승인하였고 작업반에 의한 18개월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가 전자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의 새로운 보칙(new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또는 eUCP이다.³⁾

eUCP(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는 현재의 UCP와 종이기반 신용장의 전자적 등가물의 처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eUCP는 2001년 11월 7일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Banking Commission) 회합에서 승인되었다.⁴⁾ 압도적인 지지는 B2B의 붐이 침체하였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중대한 비즈니스 신청을 위한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리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⁵⁾

즉, ICC는 전자신용장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UCP에 대한 “보칙(supplement)”⁶⁾을 발표했다. eUCP라고 하는 새로운 보칙은 전자신용장

2) <http://www.dcpprofessional.com/content/eucp.asp?Agent=ICC1>

3) Draft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http://www.iccthailand.or.th/article2.asp?id=14>

4) <http://www.lconnect.com/community/articles/ucp500/DCWNovDec01eUCPUpdates.pdf>, 투표결과는 63대 3으로서 오스트리아(2표)와 아일랜드(1표)는 반대투표를 하였다.

5) J. Katsman, “Trade Services 2001 in Review,” LCMONITPR, Vol.4, Iss.1 January 2002, p.6; 박석재, eUCP의 특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2.8, p.247에서 재인용.

에 대한 경향을 고려하면서 신용장거래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전자제시가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⁷⁾

2. eUCP의 특징

전자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전자제시를 위한 UCP의 보칙, 즉 eUCP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1) 절충주의의 채택

eUCP는 UCP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UCP를 보충하는 것이다. 즉, eUCP는 전자기록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수용할 목적으로 UCP 500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eUCP가 전자적인 방식과 기존의 종이서류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자무역시대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UCP는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에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eUCP는 UCP의 보칙으로서 UCP와 함께 사용되면서 신용장거래상의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전자기록의 제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이 전자기록만을 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eUCP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UCP를 명시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UCP와 eUCP를 모두 삽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eUCP는 UCP를 보충하는 규정이므로 UCP를 명시적으로 삽입하지 않더라도 UCP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UCP와의 일관성 유지

eUCP의 모든 조항은 전자기록의 제시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UCP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eUCP는 UCP의 조항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각조의 번호 앞에 “e”를 표기하고 있다.

3) 지속적인 개정의 시사

eUCP는 필요한 경우 UCP의 다음 개정, 즉 UCP 600이 발표되기 전에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CP는 현재 1.0판으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6) supplement를 ‘추록’, ‘부칙’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보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추록은 ‘추가하여 기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칙은 법률 등의 끝머리에 부가해서 경과규정, 시행기일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보칙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법률용어이다, 박성철, 전자무역과 eUCP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2, p.120

7) <http://www.iccwbo.org/home/conferences/e-ucp/intro.asp>

8) 전순환, eUCP의 특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2.8, p.158-162.

eUCP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개정판 또는 그 이후의 개정판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판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eUCP가 계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eUCP의 사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제시가 종이서류보다 안전하고 편리할 수도 있지만,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나 수익자에게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면 종이서류의 제시는 전자기록의 제시로 대체될 것이다.

4) 전자제시에 적합한 용어의 정의

eUCP는 전자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즉, UCP에서 사용되고 있는 “appears on its face”, “place for presentation”, “sign”과 같은 용어는 전자적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eUCP에서 다시 정의되었다. 비록 관행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록의 제시만을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eUCP는 전자기록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UCP와 eUCP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전자제시를 허용하는 신용장하에서 종이서류 또는 전자기록을 수신하거나 또는 대금지급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호성을 제거한다. 예를 들면, 서류란 전자기록을 포함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서류에는 종이서류와 전자기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와 서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5) 기술중립성의 유지

eUCP는 전자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기술이나 시스템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기술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eUCP는 특정기술이나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사용될 기술이나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eUCP가 형식이나 인증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와 관련된 규정 존재하지 않음

eUCP는 신용장이 발행되거나 통지될 때 적용되지 않고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시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전자제시를 위한 UCP 500의 보칙은 그 명칭 때문에 제시를 강조하고 발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eUCP의 “서문”은 eUCP가 전자적으로 신용장의 발행 또는 통지에 관하여 어떠한 발행도 규정

하고 있지 않다고 명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의 시장관행 및 UCP가 이것이 행해지는 것을 오랫동안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점에서, eUCP의 사용자들은 UCP의 여러 조항이 종이서류에 상응한 전자제시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eUCP를 적용하기 위한 어떠한 변화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UCP와 eUCP를 함께 해석하면, 이들은 이와 같은 관행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⁰⁾

7) 수익자의 서류제시의 완료통지의무 부가

eUCP는 전자기록을 제시하고 수익자가 그 제시의 완료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CP하에서는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할 의무만 있었지만, eUCP하에서는 수익자의 전자기록의 제시의무에 추가하여, 수익자에게 그 제시의 완료통지를 행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8) 전자거래 실무관행의 반영

eUCP는 전자기록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기록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통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UCP 또는 eUCP 신용장이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여러 통 제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한 통의 전자기록만을 제시하면 된다. 왜냐하면, 전자기록은 그 자체가 원본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전자기록을 반복적으로 송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9) 운송서류 발행일자의 단순화

eUCP는 전자선화증권 등의 전자운송서류의 발행일자를 선적 또는 발송일자로 단순화시키고 있다.

10) 새로운 유형의 서류 출현

eUCP를 적용하는 신용장하에서 제시하는 수익자는 완료통지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새로운 유형의 제시방법

전통적인 종이기반 UCP체제와 전혀 다른 요건은 제시가 행해지는 방법에서 한가지 주요한 변경을 나타내고 있다.

9) Annual Survey of LC Law & Practice: The Conference, Documentary Credit World, April 2002. p.5.

10)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 eUCP에 관한 검토, 2002, p.160.

3. eUCP와 UCP의 관계

1) 적용범위

eUCP는 전자기록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수용할 목적으로 UCP 500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다.¹¹⁾ 따라서, eUCP가 UCP에 대한 보칙으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eUCP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준거문언을 신용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장이 eUCP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본문에 “eUCP Version 1.0”¹²⁾과 같이 eUCP의 적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준거문언의 삽입과 eUCP의 적용가능한 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신용장에 그 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장이 발행된 일자에 시행되고 있는 판이 적용되거나, 또는 수익자가 승낙한 조건변경이 eUCP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조건변경일자에 시행되고 있는 판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이 eUCP를 적용한다는 문언과 함께 적용되는 판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시된 판이 적용되고, 적용되는 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장의 발행시 또는 조건변경시(조건변경이 있는 경우)에 시행되고 있는 판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eUCP는 정보통신 등의 기술발전과 상거래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개정될 것이므로, eUCP를 적용하기로 하는 신용장에 그 적용가능한 판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신용장의 발행 또는 조건변경시의 유효한 판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eUCP와 UCP의 관계

eUCP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eUCP의 적용을 삽입해야 하지만, eUCP를 적용하는 신용장은 UCP의 명시적인 삽입 없이도 UCP에 적용된다.¹³⁾ 왜냐하면, eUCP를 준거하도록 명시된 eUCP 신용장은 UCP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UCP에 대한 보충규정이므로, UCP가 적용된다는 준거문언을 명시적으로 삽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eUCP 신용장은 eUCP와 UCP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eUCP와 UCP가 적용상 상충되는 경우에는 eUCP가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eUCP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까지만 eUCP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기록이 제시되

11) eUCP라고 하는 새로운 보칙은 전자신용장에 대한 경향을 고려하면서, 신용장거래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전자제시가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http://www.iccwbo.org/home/conferences/e-ucp/intro.asp>); 일부에서는 전자기록만으로 제시되는 경우만을 규율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종이서류와 전자기록을 혼합하여 제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전자기록만에 의한 제시를 촉진하고, 또한 신용장의 일부 조건들이 전자기록만으로는 만족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작업반의 대체적인 시각임에 따라 종이서류와 혼합하여 제시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김영훈,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p.539).

12) 여기에서 Version 1.0은 작성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여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보칙은 최초로 작성된 것이며, 계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13)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1/eucp.asp

기 때문에 eUCP가 적용되는 것이지 함께 제시된 종이서류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UCP 신용장하에서 전자기록만이 제시되거나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eUCP와 UCP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종이서류만이 제시되거나 종이서류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UCP만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eUCP 신용장이 수익자가 종이서류 또는 전자기록의 제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때 수익자가 종이서류만의 제시를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eUCP 신용장이 종이서류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UCP만이 적용된다.

Ⅲ. eUCP상의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1. 전자기록의 발행과 제시

1) 전자기록의 발행

(1) 전자기록의 정의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은 전자수단에 의하여 생성, 작성, 송신,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자료로서, 송신자의 명백한 신원과 그것에 포함된 자료의 명백한 출처 및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은 상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입증될 수 있으며, eUCP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에 대하여 심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⁴⁾

(2) 전자기록의 원본성

eUCP 제e-8조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를 위한 UCP 또는 eUCP 신용장의 모든 요구는 하나의 전자기록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¹⁵⁾고 규정함으로써,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기록의 원본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UCP 또는 eUCP 신용장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기록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¹⁶⁾

다시 말하면, UCP 또는 eUCP 신용장이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여러 통 제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한 통의 전자기록만을 제시한다면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자기록은 그 자체가 원본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전자기록을 반복적으로 송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요구

14) eUCP Art. e3(b)(i).

15) “Any requirement of the UCP or an eUCP Credit for presentation of one or more originals or copies of an electronic record is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one electronic record.”; eUCP Art. e-8.

16) 전순환,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원본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2005.2, p.299.

되는 수량으로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즉, 종이서류는 원본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그것의 재발급에 따르는 수고가 크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반송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전자기록은 일반적으로 원본의 개념이 없으며 작성자의 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어 쉽게 복제-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익자에게 반송되지 않고 삭제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본으로서의 기능이 부여된 전자기록은 신중하게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¹⁷⁾

(3) 전자기록의 발행일자

전자기록상에 발행일자에 관하여 특별한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시된 일자,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의 송신일자를 발행일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송신일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기록의 수신일자를 송신일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기록의 송신일자가 그 발행일자로 취급될 수도 있고, 전자기록의 수신일자가 그 발행일자로 취급될 수도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일=송신일=발행일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4) 전자운송서류의 발행일자

운송을 증명하고 있는 전자기록은 전자선화증권, 전자해상화물운송장 등과 같은 전자운송서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자운송서류상에 선적일자나 발송일자를 증명하는 부기(notation)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기일자를 선적일자 또는 발송일자로 간주하고, 선적일자나 발송일자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운송서류의 발행일자를 선적일자 또는 발송일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일=부기일=선적일 또는 발송일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또한 이러한 전자운송서류에 추가적인 자료내용이 부기되어 있다면, 종이운송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 자료내용은 동일한 전자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명되거나 인증될 필요가 없다.

2) 전자기록의 제시

eUCP 신용장에서 전자기록의 제시는 제e5조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 및 제시방법,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의무, 제시된 서류와 eUCP 신용장과의 동일성 확인, 전자기록의 수신, 전자기록의 인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제시형식

eUCP 제4조에서는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어야 하는 형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자기록

17) 전순환, eUCP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2002.12.

의 형식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은 어떤 형식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행은행이 전자기록의 형식을 지정하지 않아서 수익자가 임의의 형식으로 전자기록을 제시한 경우에, 또는 그 은행이 전자기록의 형식을 지정하고 수익자가 그 지정된 형식으로 전자기록을 제시한 경우에, 그 은행의 시스템이 수익자에 의해서 제시된 전자기록을 읽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은 그 전자기록의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은 eUCP 신용장에 전자기록이 제시되어야 하는 형식을 명시하는 것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시장소

eUCP 신용장이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한다면 eUCP 신용장에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장소로서 전자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eUCP 신용장이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제시를 모두 허용한다면 eUCP 신용장에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장소(전자주소)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의 제시를 위한 장소도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UCP 500¹⁸⁾에 기반하는 신용장하에서는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eUCP 신용장하에서 종이서류가 사용된다면 신용장의 유형에 관계없이 제시장소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eUCP 신용장하에서는 전자기록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도 반드시 제시장소를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제시방법

수익자는 모든 전자기록을 일괄하여 한번에 제시할 필요도 없고, 각각의 전자기록은 분리되어 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하에서의 모든 서류는 신용장이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자에 의하여 일괄되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eUCP 신용장하에서의 전자기록은 그 제시방법에 있어서 ① 종이기반 신용장과 유사하게, 수익자 이외의 다른 기관이 전자기록을 수익자에게 송신하고, 수익자가 그 전자기록과 자신의 전자기록을 일괄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 ② 수익자 또는 수익자 이외의 다른 기관이 각각의 전자기록을 은행에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또는 ③ 수익자 이외의 다른 기관이 전자기록을 은행에 제시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송신하고, 수익자가 그 전자기록과 수익자 자신의 전자기록을 일괄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하에서는 매입은행이 수익자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수익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발행 받은 종이서류와 자신이 발행한 종이서류를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eUCP 신용장하에서는 운송인, 보험자, 검사기관 등의 무역유관기관이 선화증권, 보험증권, 검사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 수익자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각각의 전

18)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제시의 유효기일과 장소(an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또는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s)을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일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UCP 500 제42조 a항.

자기록을 일괄하여 매입은행 등에 제시하거나, 또는 이들 기관이 각각의 전자기록을 매입은행 등에 직접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자가 일괄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들 기관이 매입은행 등에 직접 제시하는 것이 비용의 절감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이것은 매우 현실성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자기록은 수익자에 의하여 일괄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자기록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자기록의 송신자들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송신자라 하더라도 전자기록의 제시를 다른 파일로 송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자 이외의 다른 기관이 전자기록을 매입은행 등에 직접 제시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송신하더라도, 수익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전자기록을 다시 매입은행 등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4) 제시완료통지

eUCP 신용장하에서 수익자가 전자기록을 제시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제시를 받는 은행¹⁹⁾에게 그 제시의 완료통지를 행한 경우에만 제시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익자에게 제시완료통지를 행할 책임을 부담시킨다. 다시 말하면, 수익자가 전자기록을 일괄하여 제시하거나 또는 수익자 이외의 기관들이 전자기록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수익자는 제시가 완료될 때 제시완료통지를 행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제시하여야 할 전자기록이 하나 이상인 경우, 수익자가 전자기록을 한번에 일괄하여 제시하지 않고 나누어서 제시하거나, 또는 수익자 이외의 다른 기관이 개별적으로 전자기록을 제시한다면, 은행은 그 전자기록을 수신할 때마다 심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수익자가 전자기록을 전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일까지 그 심사를 연기한다면 수익자로서는 서류를 치유할 기회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가 은행에게 그 전자기록의 제시완료통지를 통지한다면, 은행은 수익자로부터 그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그 전자기록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요구되는 모든 전자기록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그 제시완료통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제시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그 제시완료통지를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수익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자기록이 은행에 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자는 신속하게 은행에 제시완료통지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 중 어느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수익자는 그러한 전자기록의 제시가 어느 신용장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시된 전자기록에 이와 관련된 신용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행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은 하나의 신용장거래에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서류와 달리 전자기록의

19) 제시를 받는 은행은 전자기록의 제시를 받는 은행을 의미한다.

경우에는 수익자 이외의 다른 기관이 전자기록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이한 당사자로부터 전자기록을 수신한 은행은 그 전자기록이 어떤 신용장과 관련되어 제시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전자기록의 제시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제시를 받는 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제시완료통지를 수신하여야 한다.

결국, eUCP하에서, 완료를 지시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심사를 위한 기간은 완료통지가 수령된 후에 개시하고 수익자가 그러한 통지를 발송할 때까지 제시는 행해지지 않는다.

(5) 제시기간의 연장

전자기록의 제시당사자가 제시기간의 최종일 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전자기록을 송신하였으나, 불가항력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등 그 사유에 관계없이 은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은행이 그 송신된 전자기록을 수령할 수 없다면, 이것은 전자기록의 제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은행이 은행영업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영업을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제시를 위한 일자나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최초의 다음 은행영업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등의 위험을 제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은행은 큰 불편함이 없지만, 수익자는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령할 수 있는 최초의 다음 은행영업일까지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일을 연장한다고 하는 규정은 거래전체에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록은 이미 제시되었지만 그 제시완료통지만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 통신 또는 종이서류에 의하여 제시완료통지를 하였다면,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신하기 이전이라도 완료통지가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시당사자가 모든 전자기록을 송신한 후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만을 남겨 둔 상태에서 은행시스템의 장애로 제시완료통지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신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는 전자적 방식이 아닌 통신 또는 종이서류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으며, 통신 또는 종이서류에 의한 제시완료통지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기록의 수신보다 더 빨리 송부되더라도 그 완료통지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은행이 모든 전자기록을 수신하였지만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 제시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은행은 은행시스템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완료통지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서류심사를 지연하고 대금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시완료통지는 그것이 은행시스템의 장애로 송신되지 않는 경우 전자적 방식이 아닌 통신 또는 종이서류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은행의 대금지급의 지연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6) 제시후의 전자기록의 변조

전자기록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그 파일을 열 수 없거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제시된 이후에 변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은행은 수신된 전자기록이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전자기록은 유효한 제시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므로 은행은 전자기록을 제시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전자기록을 다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이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기간은 정지되고 제시인이 전자기록을 재제시할 때 재개된다. 그리고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지정은행은 발행은행과 어떤 확인은행에게 재제시를 위한 요청의 통지를 행하여야 하고 그들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 이내에 재제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어떠한 최종기한도 연장되지 않는다.²⁰⁾

이 규정은 제시를 위한 기간은 연장되지 않지만, 재제시를 위한 기간은 연장된다. 재제시를 위해 허용된 기간은 30일이다.²¹⁾ 즉, 이것은 송신자가 최고 30일 이내에 서류를 재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송신자가 그 때까지 재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²²⁾ 또한, 지정은행은 서류의 재제시를 요청하였다는 것과 심사를 위한 기간이 정지되었음을 발행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확인은행이 있는 경우로서,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은행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최종기한도 연장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시를 위한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재제시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전자기록의 심사

1) 전자기록의 수신과 인증

(1) 전자기록의 수신

eUCP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가 수신된 것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시가 어느 신용장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시된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가 어느 신용장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eUCP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서류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시가 수신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시가 어느 신용장과 관련되어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자기록은 나누어 제시되므로 각각의 제시시에 관련된 신용장을 기재해야 할 것이나, 종이서류는 한번에 제시될 것이므로 종이서류의 경우는 각각의 종이서류가 아닌 cover letter에 기재함

20) eUCP 제e11조 b항.

21) <http://www.leconnect.com>

22)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1/eucp.asp

으로 충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우편(e-mail)에 여러개의 파일을 첨부하여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전자메시지에 여러개의 전자기록을 첨부하여 제시하는 경우 그 전자메시지에 신용장을 표기하고 있다면 첨부된 전자기록 각각에 신용장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²³⁾

이는 제시된 서류가 어떤 eUCP 신용장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확인의무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운송인이 전자선화증권을 직접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 그 전자선화증권이 어떤 신용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그 제시는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결국 수익자는 서류를 제시하고도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자기록의 인증

eUCP는 전자기록이 제시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전자기록이 인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전자기록의 인증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eUCP상의 전자기록의 인증은 이전에 제정된 UNCITRAL의 전자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 또는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증이라 함은 지급지시나 그 정정 또는 취소 등의 전자기록이 송신자로 지정된 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절차를 말한다.²⁴⁾ 이와 같이 인증(Authentication)은 누가 의사표시를 하였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의미한다. 즉, 거래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은 사용자 인증과 메시지 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사용자 인증은 원격지에서 접속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메시지 인증은 원격지에서 전송된 메시지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증이라 함은 사용자 인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기록의 위조와 도용에 대한 문제이며, 메시지 인증은 무결성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기록의 변조에 대한 문제이다.

2) 전자기록의 심사범위

(1) 전자기록의 심사

전자기록의 심사에 관해서는 외부시스템에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거나 또는 참조하여 심사가 행해지는 관행을 수용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기록이 심사되어야 하는 전자기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① 은행시스템에 직접 송신되는

23) 김영훈, 전계논문, p.545.

24)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redit Transfers 1992, 제2조 i.

전자기록, ②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과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시스템에서의 전자기록, ③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을 참조하도록 표시되어 있다면, 참조된 시스템에서의 전자기록이어야 한다. 그러나 ②와 ③의 방식으로 전자기록을 제시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전자기록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외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이 전자기록의 심사를 위하여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불일치로 간주되어 지급거절될 수 있다. 이것은 수익자가 하이퍼링크 또는 외부시스템과의 참조를 첨부하여 제시하는 경우, 수익자가 하이퍼링크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있더라도 당해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외부시스템의 문제로 은행이 그 제시된 전자기록을 볼 수 없을 때, 그러한 시스템으로의 접근실패에 대한 책임을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결국 전자기록은 외부시스템과의 하이퍼링크 또는 참조에 의하여 심사될 수 있지만, 수익자는 그 시스템으로의 접근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외부시스템으로의 접근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자 한다면 전자기록을 은행시스템에 직접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매입은행 등의 지정은행이 수익자 또는 수익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자기록을 제시받아 그 전자기록을 점검한 후에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 등에 발송한 경우, 이러한 전자기록은 지정은행에 의하여 외관상의 진정성이 점검된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형식을 지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즉, 발행은행이 eUCP 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심사가능한 전자기록의 형식을 지정하여 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발행은행이 전자기록의 형식을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접근불가능한 형식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무능력에 의한 심사불능은 거절을 위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전자기록의 형식을 지정하지 않아서 수익자가 임의의 형식으로 전자기록을 제시한 경우에, 또는 이들 은행이 전자기록의 형식을 지정하고 수익자가 그 지정된 형식으로 전자기록을 제시한 경우에, 이들 은행의 시스템이 수익자에 의해서 제시된 전자기록을 읽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 은행은 그 전자기록의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즉, 이들 은행의 시스템이 전자기록을 읽을 수 없는 것은 수익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익자에게는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2) 서류의 심사기간

수익자가 전자기록의 제시완료통지를 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그 제시의 완료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전자기록의 제시가 완료된 후에 수익자가 그 제시완료통지를 행한 경우에 은행의 심사기간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와 은행의 전자기록의 심사를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은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은행영업일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면, 서류심사기간은 그 완료통지가 수신된 은행영업일의 다음의 은행영업일에 개시한다. 그러나 은행시스템 등의 장애 등으로 제시된 서류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완료통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면, 서류심사기간은 은행이 수익자의 완료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최초의 다음 은행영업일에 개시한다.

이와 같이 서류심사기간의 개시시기에 대하여, UCP는 “서류수령일의 다음 제7은행영업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서류수령일의 다음날을 개시일로 하여 제7은행영업일을 심사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eUCP는 eUCP는 서류심사기간의 개시시기 뿐만 아니라 서류제시기간 또는 완료통지가 연장된 경우의 서류심사기간의 개시시기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서류심사의 개시일에 대하여는 UCP는 “서류수령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eUCP는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신되는 은행영업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로 규정함으로써 서류심사의 개시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²⁵⁾ 왜냐하면, 만일 서류를 수령하거나 또는 전자기록의 완료통지를 수신한 은행영업일의 다음날이 은행영업일인 경우에는 UCP나 eUCP의 규정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UCP하에서는 그다음날부터 서류심사가 개시되고, eUCP하에서는 공휴일은 제외되고 은행영업일부터 서류심사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를 수령하거나 전자기록의 완료통지를 수신한 은행영업일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eUCP 신용장은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 비하여 오히려 심사기간이 더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류심사기간에 대하여는 UCP는 7은행영업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²⁶⁾, eUCP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심사기간에 대하여는 UCP의 7은행영업일²⁷⁾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서류심사는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신되는 은행영업일의 다음 은행영업일에 개시하거나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최초의 다음 은행영업일에 개시하고, 서류심사기간이 개시된 후 7은행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전자기록의 수리거절통지

(1) 수리거절의 통지기간

eUCP에서는 거절통지의 개시일과 그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UCP

25) 여기에서 UCP는 서류의 개시의 기산일을 서류수령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날은 당연히 은행영업일일 것이므로 은행영업일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eUCP의 경우에는 UCP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수령일이라는 표현대신 은행영업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전자기록의 완료통지는 은행영업일이 아니더라도 수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영업일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26)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각각 서류를 심사하여 그 서류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송부해 온 당사자에게 통지하는데 있어서 서류수령일의 다음의 제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가진다; UCP 500, 제13조 b항.

27) ICC의 작업반이 eUCP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UCP 제13조 b항의 규정되어 있는 서류심사기간(7은행영업일)을 단축하고자 하였으나, 각 국내위원회의 반대로 인하여 7은행영업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7은행영업일이라고 하는 서류심사기간이 전자기록이나 종이서류를 제시할 때 각각 다르게 규정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4조 d항 i 호에서는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의 수령일의 다음 날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간내에 전신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⁸⁾ 따라서, eUCP 신용장의 거절통지기간은 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제시완료통지를 수령한 은행영업일의 다음날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이내이며, 그 거절통지방법은 전신(telecommunication)으로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이 될 것이다.

참고로, eUCP 제7조에서는 서류심사기간의 개시일을 “수익자로부터 완료통지가 접수된 은행영업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거절통지의 개시일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UCP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서류심사와 거절통지의 개시일을 모두 서류의 접수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²⁹⁾

(2) 수리거절된 전자기록의 처리방법

eUCP는 은행이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수리거절의 통지를 행한 경우, 종이서류의 반송과 전자기록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은행이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전자기록의 처분을 위한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거절의 통지를 행한 경우, 은행은 반송되지 않은 모든 종이서류를 수익자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은행이 전자기록의 처분을 위하여 지정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시인으로부터 전자기록의 처분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은 아무런 책임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은 전자기록과 종이서류가 혼합되어 제시된 경우, 제시된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의 일부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면, 그 전자기록과 종이서류를 보관한 채 거절을 통지할 것이고, 거절의 통지를 받은 수익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용장조건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를 재제시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의 재제시를 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재제시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제시된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eUCP에서는 은행이 보관중인 전자기록과 종이서류를 처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이서류는 수익자에게 반송되도록 규정하고, 전자기록은 그 처분방법에 대하여 수익자의 지시가 없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이서류는 원본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그것의 재발급에 따르는 수고가 크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반송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전자기록은 일반적으로 원본의 개념이 없으며 작성자의 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어 쉽게 복제사용할 수 있

28) UCP 500 Art.14(d) i : If the Issuing Bank and/or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decides to refuse the documents, it must give notice to that effect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without delay but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 Such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documents, or to the Beneficiary, if it received the documents directly from him.

29) 채진익, eUCP와 국제표준은행관행상 전자기록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2002.8, p.146.

을 것이므로 수익자에게 반송되지 않고 삭제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본으로서의 기능이 부여된 전자기록은 신중하게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IV. eUCP상의 전자기록의 심사기준

1. 전자기록의 심사기준의 원칙

은행에서 수리되는 서류는 그것이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여야 함은 물론 이들 서류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은 제출되는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³⁰⁾ 이에 적용되는 원칙이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이다. 또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조건과의 일치성은 “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하도록 UCP 500 제13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엄밀일치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은 은행에 제시된 모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밀히 일치하여야만 그 제시된 서류를 수리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엄밀일치의 원칙은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서류를 수리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 등의 근거계약과는 별개의 거래라고 하는 독립성의 원칙과 서류거래라고 하는 추상성원칙에 있다.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간에 엄밀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엄밀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다. 즉,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은행으로서는 상업위험의 제거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자로서는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할 수 있고, 발행의뢰인으로서는 안심하고 거래에 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의 근거 내지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³¹⁾

첫째,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³²⁾, 만약 서류상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30) 김종철, eUCP에서 서류심사기준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2002.8, p.96.

31) 新堀聰, 「貿易取引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2, pp.301-302.

32) 엄밀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급을 행한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조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게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수 또는 지급을 행하였다면, 물품거래에 문외한인 은행으로서 대금상환여부는 전적으로 발행의뢰인의 자유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상업위험(commercial risk)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매수인은 시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자 할 것이고,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조치를 시인하고 지급에 응할 것이다. 또한, 대량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은행으로서 서류가 거래의 관습이나 기타의 상황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급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수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자는 신용장을 수령함으로써 발행은행의 지급보장을 얻고, 발행은행에게 환어음의 인수·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발행은행에게 상업위험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신용장의 내용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다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안정적인 거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어떤 이유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지만,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발행의뢰인과 교섭하여 신용장을 수정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에 신용장과 다른 서류의 수리를 교섭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셋째, 발행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발행의뢰인이 지정한 신용장조건에 따른 경우에만 발행은행이 지급에 응하기 때문에, 발행의뢰인은 엄밀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발행의뢰인은 조건이 다른 서류를 강요받을 염려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UCP(500) 제13조 a항 전단³³⁾에서는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장통일규칙의 모든 조문에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내용상의 조건이 아니라 문면상의 일치성에 관한 것으로서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 전단에서는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업송장상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명세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엄밀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UCP에서는 서류심사기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전자기록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종이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엄밀일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제시된 전자기록이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수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

되고, 발행의뢰인에 대한 대금상환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33)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있어서 전자기록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수신된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함으로써 재입력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 내용이나 내용 중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배가될 수 있다. 또한, 자동심사기능의 도입에 의하여 아주 사소한 불일치라 하더라도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전자기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당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실질일치의 원칙)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밀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신용장거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상당일치의 원칙은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간에 형식적인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시된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일치를 이유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본질적 변경으로 간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엄밀일치의 원칙에만 너무 집착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① 수익자가 발행은행에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게 대금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용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②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발행은행이 이미 지급한 서류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이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수리거절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류상에 명백한 타자상의 오류(obvious typographical errors) 등에 대하여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류를 수리거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 후단에서는 “다른 모든 서류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general terms)로 기술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업송장 이외의 다른 모든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하여 상당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UCP에서는 서류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엄밀일치의 원칙이나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아직까지 eUCP는 전자기록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과 종이서류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과 더불어 상당일치의 원칙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무역거래가 전자적 방식으로 행해질 때 전자기록만이 제시된다면, 서류심사기준으로서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3) 국제표준은행관행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은 “결코 독단적이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부정직하지 않고, 가장 정직하고, 숙련되고 예견가능한 관행을 구현하는 규범을 말한다(Far from being arbitrary, negligent of dishonest, letter of credit standard banking practice contains the rules the embody the most honest, skillful and predicable practices)”라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개정이유에 대한 주석에서 정의하고 있다.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표준관행”(standard practice)이라는 용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계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① 1920년 뉴욕에서 발간된 “수출상업신용장규약(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s)”, ② 199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13조 a항, ③ 1995년 “개정 미국통일상법전(UCC)” 제5편(신용장) 제5-108조, ④ 1995년에 제정된 “UN 보증신용장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⑤ 1996년 제정된 미주지역의 “신용장서류심사표준은행관행(SBPED)”, ⑥ 1998년 제정된 “국제보증규칙(ISP 98)” 제4.01조 b항 등에서 사용되어 왔다.

UCP 500 제13조 a항 두 번째 문장³⁴⁾에서는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명시된 서류의 문면상 일치성은 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조건에의 문면상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원칙으로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이 적용되게 되었다. UCP 500 제13조 a항에 따라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정리한 결과물로서, ICC 은행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ISBP(국제표준은행관행)를 제정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ISBP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의 약칭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환신용장에 관한 ICC의 규칙인 UCP 500에 대한 실무상의 보완서(practical complement)이다.³⁵⁾

2. eUCP상의 전자기록의 심사

1) 전자기록의 심사기간

eUCP 신용장의 경우에는 eUCP 제7조 a항에서 서류심사의 개시일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서류심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UCP 제13조 b항의 서류수령후 제7은행영업일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CP하에서 전자기록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34)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35)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 No.645, 2003.1, p.3; ISBP를 국제표준은행관습이라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며, ICC 일본국내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표준은행실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 심사기간을 서류수령후 제7은행영업일로 되어 있는 UCP상의 서류심사기간보다 단축하여야 한다고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록과 종이서류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UCP상의 서류심사기간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록의 사용이 은행이 자료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고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총기간을 반드시 줄이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말로,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혼합이 있는 경우, 심사는 제시가 단순히 종이매체로 되어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³⁶⁾

2) 수리거절통지의 기간

eUCP 제e7조 a항에서 서류심사의 개시일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수리거절통지기간의 개시일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UCP 제e7조 a항의 “서류심사기간의 개시일”과 UCP 500 제14조 d항의 “거절통지기간의 개시일” 중에서 어느 조항을 수리거절통지의 개시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eUCP에서 수리거절통지의 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그 개시일은 eUCP의 서류심사기간의 개시일인 “수익자의 완료통지를 수신한 은행영업일의 다음 은행영업일”을 적용하고, 그 수리거절통지기간은 UCP의 수리거절통지의 기간인 “서류수령일의 다음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를 적용함으로써 수리거절통지의 기간은 수익자의 완료통지를 수신한 은행영업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내에 통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UCP에서는 수리거절통지의 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그 개시일은 “서류수령일의 다음날”이고 그 수리거절통지의 기간은 “제7은행영업일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eUCP에서는 서류심사의 개시일에 대한 규정만 있고 수리거절통지기간의 개시일이나 수리거절통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수리거절통지의 기간에 대하여 eUCP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UCP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UCP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UCP의 규정이 있음에도 eUCP의 서류심사의 개시일을 수리거절통지의 개시일로 적용한다는 것은 UCP를 보충하는 것이라는 eUCP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거절통지의 기간의 개시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V. 결 론

eUCP는 디지털형식의 전자서류의 제시와 서류불일치에 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36) James E. Byrne & Dan Taylor, ICC Guide to the eUCP, ICC Publishing SA, pp.108-109.

자동화된 점검과정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전통적인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는 할 수 있다. eUCP의 제정이 신용장을 사용하는 무역거래의 완전한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거래의 완전한 전자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이서류의 제시만에 의하거나 또는 전자기록의 제시만에 의하거나, 아니면 전자기록과 종이서류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의하여 신용장거래가 행해지는 것이 상당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CP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만이 제시되거나 또는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까지만 eUCP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기록이 제시되기 때문에 eUCP가 적용되는 것이지 함께 제시된 종이서류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즉, eUCP 신용장하에서 전자기록만이 제시되거나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eUCP와 UCP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종이서류만이 제시되거나 종이서류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UCP만이 적용된다. eUCP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eUCP의 적용을 삽입해야 하지만, eUCP를 적용하는 신용장은 UCP의 명시적인 삽입 없이도 UCP에 적용되기 때문에 eUCP 신용장은 두 규칙 모두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eUCP와 UCP가 적용상 상충되는 경우에는 eUCP가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eUCP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전자기록만이 제시된다면 자동심사기능의 도입에 의하여 아주 사소한 불일치라 하더라도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전자기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eUCP 신용장하에서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된다면,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자동심사기능의 도입에 의하여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고, 종이서류의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일치성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엄밀일치의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종이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사소한 하자 등의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는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기록으로 본다. 따라서, eUCP 신용장하에서 전자기록의 제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자기록의 일치성여부를 결정한 다음,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전자기록의 일치성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 eUCP에 관한 검토, 2002.

김영훈,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 김종철, eUCP에서 서류심사기준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2002.8
- 박석재, eUCP의 특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2.8.
- 박성철, 전자무역과 eUCP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2
- 전순환,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원본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2005.2.
- 전순환, eUCP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2002.12.
- 전순환, eUCP의 특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2.8.
- 채진익, eUCP와 국제표준은행관행상 전자기록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2002.8.
- 최석범, eUCP의 주요내용과 UCP와 eUCP상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2.2.
- 新堀聰, 「貿易取引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2.
- Annual Survey of LC Law & Practice: The Conference, Documentary Credit World, April 2002.
- Katsman, J., "Trade Services 2001 in Review," LCMONITPR, Vol.4, Iss.1 January 2002.
- Byrne, James E. & Taylor, Dan, ICC Guide to the eUCP, ICC Publishing SA.
- ICC,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2001.
-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500, 1993.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645, 2003.1.
-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redit Transfers, 1992.
- <http://www.dcpprofessional.com/content/eucp.asp?Agent=ICC1>
- <http://www.iccthailand.or.th/article2.asp?id=14>
- <http://www.iccwbo.org/home/conferences/e-ucp/intro.asp>
- <http://www.iccwbo.org/home/conferences/e-ucp/intro.asp>
-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1/eucp.asp
-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1/eucp.asp
- <http://www.lconnect.com/community/articles/ucp500/DCWNovDec01eUCPUpdates.pdf>;
- <http://www.leconnect.com>
- <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com>